

서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의회소재지내 및 관할구역내 출장시의 여비) ①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별표 1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
-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의회소재지내 및 관할구역내의 출장일 때에는 별표 1에 의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 ③ 제2항에서 의회소재지내 및 관할구역내의 출장이라 함은 서산시와 서산군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서산군내라 하더라도 도서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국의여비지급기준표중 철도운임란, 선박운임란 및 자동차운임란을 각각 삭제하고 숙박비란과 식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인당)	
가등급	130	가등급	107
나등급	109	나등급	100
다등급	90	다등급	94
라등급	70	라등급	87
가등급	114	가등급	81
나등급	97	나등급	75
다등급	81	다등급	69
라등급	64	라등급	63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 동 차 운 입	현 지 교통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 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갑지 : 20,700 을지 : 18,700	11,000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갑지 : 16,200 을지 : 15,500	10,500

- 비고 : 1.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입 및 항공운입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입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입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입을 지급한다.

서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서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중에서 서산군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은 서산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별표2)의 일비의 액수란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地方債發行承認內譯書

事業名 : 保寧댐 廣域 上水道 淨水場 建設

承認申請額 : 257百萬원

借 入 先 : 韓國電力公社

위와 같이 債務發行을 承認합니다.

1994. 8. 1

瑞山郡 議 會 議 長

瑞山郡守 貴下